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04550 서울 중구 충무로 49-2 동주빌딩 5F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사무국
사무국 전화: 02-2271-6606 / E-mail: kpsgquality@gmail.com

문서번호	수면정도 제 2026-26호
시행일자	2026.10.02
수신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한국수면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참조	
제목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규정 변경 안내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도관리 운영 규정」 제5장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격 갱신 중 제9조 제2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입니다.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정

「정도관리 운영 규정」 제5장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격 갱신

제9조(수면다원검사 교육 이수자 자격 갱신)

2. (자격 갱신의 방법)

(현 행)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자는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한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일 동안 시행하는 수면의학 학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연수평

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5년간 총 3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연수평점은 수면다원검사 교육기관으로부터 신청된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단, 연수평점은 한 프로그램에 최대 6평점까지 부여한다.

(개정)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자는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한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일 동안 시행하는 수면의학 학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5년간 총 3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기본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에 취득한 기본교육평점은 10점 이내로 연수평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수평점은 수면다원검사 교육 기관으로부터 신청된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단, 연수평점은 한 프로그램에 최대 6평점까지 부여한다.

■ 주요 변경사항

교육이수증 갱신에 필요한 5년간 총 30점의 연수평점 중,

기본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 취득한 기본교육평점은 10점 이내로 연수평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자격 갱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수면다원검사정도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재원

